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8. 22 선고 2021가단32915 판결 [매매대금반환금 대위청구의 신청]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김응우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식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원고 B에게 22,902,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은 2018. 9.경 피고로부터 22톤 선박인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18. 9. 11. 1억 원, 2018. 9. 12.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D로부터 위와 같이 2억 원을 수령한 뒤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매립형 수조함을 철거하는 등의 선박개조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3억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 대표이사였고 2019. 10. 29.부터는 D 사내이사였던 F은 피고에게 2019. 10. 19. ‘D에서 E 매매대금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시킨 바 있습니다. 방어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배를 구입하지 못할 것 같으니 입금한 돈을 D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상으로 D에서 제작한 수조를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의 관리 하에 강원 고성군 공현진항에 정박되어 있다.바. 과세년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D가 신고·납부하거나 D에 부과된 법인세, 재산세(토지, 건물, 주택, 선박 등) 등은 없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2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8. ‘D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 원고 B에게 1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위 법원 2020가합30562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9.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D에게 ‘2억 원을 선지급하면 이 사건 선박을 일시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부터 2억 원을 지급받고도 그 일시사용 허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D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바, D가 2019. 10. 19.경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결국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일시사용 허락의무 위반’ 또는 ‘D의 잔금지급의무 이행거절 내지 잔금지급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이나 선박인도 없이 장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신의칙상 위 매매계약은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수령한 매매대금 2억 원 중 계약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D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D에 대한 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합30562 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위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행사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 원, 원고 B에게 22,902,919원(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고 B가 D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변제에 충당한 1억 1,100만 원을 뺀 잔액) 공제하는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채권자대위청구의 당사자적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 사건 선박 일시사용 허락의무 위반’이나 ‘D의 잔금지급의무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잔금 수령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일시사용하게 해 줄 의무'가 있었는지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었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이 문서로 기재된 바 없다.

(ㄴ) 증인 F은 법정에서 '원고 A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 A가 자신은 고기를 넣을 테니 우리에게 배를 사라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 A가 소개해 준 G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사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피고는 알지 못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계약금 5,000만 원만 주려고 했더니, 원고 A가 내세운 G이 중도금까지 2억 원을 주면 배의 소유권이전은 안 되지만 사용은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해서 2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가 직접 저한테 약속한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일시사용하게 해 준다는 약속은 원고 A 측 사람인 G이 하였다는 것이지, 피고가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ㄷ)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일시사용하게 해 주기로 한 적이 없고, 다만 잔금 지급전에 먼저 개조공사를 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원고 주장을 부인한다. 그리고 D가 2018. 10. 10.경 H에게 '방어 운반수조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한 점, 증인 F도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H을 시켜 수조함 설치 등 선박 개조공사를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이 피고 주장에 부합한다.

(ㄹ) 한편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20. 10. 16.경 F에 대한 사기 등을

불기소결정하면서(의정부지방법검찰청 2020년 형제34903호), "피의자(F)는 '2억 원을 송금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았는데 C(피고)이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에게 2억 원이 송금된 내역이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일시사용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F의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위 불기소결정서에는 '참고인 C(피고)도 피의자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선박에 수조함을 설치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선박 개조공사는 허용해 주었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ㄴ) 위 형사사건에서 F은 2019. 10. 4. 남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저(F)와 I1) 의 생각은 A(원고 A)가 저희 회사를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여 저희도 A가 약속과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사업을 진행하고자 E 매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주는 완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배를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잔금 지급전에 이 사건 선박을 일시사용하게 해 줄 의무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ㄷ) 뿐만 아니라 F은 2019. 10. 19.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원 중 5,000만 원만 공제하고 1억 5,000만 원은 반환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일시사용하게 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라거나 피고를 비난하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F의 2019. 10. 19.자 문자메시지에는 ‘방어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배를 구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그 이후 F이 피고에게 보낸 2019. 10. 26.자 문자메시지에는 ‘일을 복잡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는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하루 속히 돈을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2019. 12. 6.자 문자메시지에는 ‘D에서 배를 구매하지 못해 선주님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정말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회사가 사정이 생겨 구매하지 못한 것이니 이해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반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D 측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위와 같은 F의 수사기관 진술과 문자메시지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 때문에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원고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선박 일시사용 허락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므로 이러한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D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어야 할 것인데, D가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④ 한편 원고 A는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별도의 특약 등이 있지 않은 한, 쌍무계약에서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하면서 그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70853 판결 등 참조), D의 잔금지급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 A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D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가 더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이나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거나 피고가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증인 F은 법정에서 ‘원고 B는 피해 회복이 되었다’,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 B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았다’, ‘원고 B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 B는 회사에서 받을 돈이 없고, 원고 A는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원고 B는 춘천지방법원 2020가합30562 판결에 기초하여 F으로부터 2022. 6. 2. 1억 원, 2022. 6. 8. 1,100만 원을 각 수령하고, F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가 춘천지방법원 2020가합30562 판결에 기하여 D에 대한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B는 위 1억 1,100만 원이 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지급경위, 지급금액 및 증인 F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1억 1,100만 원의 지급으로 채권 전부가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B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 B가 D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D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상회복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다현

1) D 사내이사이다.

2) 한편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개조하게 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매립형 수조함을 철거해 주었는데, D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여, 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 일일수입 등의 손해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한다.